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6가합111653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재	
		담당변호사 유상민, 이정하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차철순	
변	론	종	결
		2019. 3. 21.	
판	결	선	고
		2020. 1.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92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2020. 1. 3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97,926,502원 및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13. 9. 26.부터, 347,926,502원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2. 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87년경 기계제작업체인 D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C은 2006년 5월경 배우자인 피고와 크게 다투고 D의 운영에서 물러나면서 피고에게 그 운영을 맡겼다.

나. 피고는 2012. 7. 2.경 D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 피고는 C을 대표이사로 정하고, 지분 60%를 C이, 나머지 40%를 피고가 각각 보유하는 것으로 하였다. 피고는 법인 전환 전 D의 자산가치를 925,602,004원으로 평가하여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이를 원고 자산부채표 부채란에 반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수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 금융계좌에서 외상대금 결제 명목으로 2012. 9. 5. 피고의 개인사업체 D의 신한은행 계좌에 3,19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5. 어음 1,000만 원을 포함한 3,355만 원, 2012. 11. 5. 2,139만 5,000원, 2012. 12. 5. 2,255만 원, 2013. 1. 7. 4,829만 원, 2013. 2. 6. 3,320만 9,000원, 2013. 3. 5. 2,700만 5,000원,

2013. 4. 5. 2,318만 2,500원, 2013. 5. 6. 2,150만 5,000원, 2013. 6. 5. 2,044만 원, 2013. 7. 5. 1,490만 5,000원, 2013. 8. 6. 1,628만 원, 2013. 9. 5. 1,573만 원, 2013. 10. 8. 1,798만 5,000원, 합계 347,926,500원을 이체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 27. 이 사건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 명의로 펀드에 투자하였다.

마. C은 2013년 10월경부터 원고 운영에 다시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와 C은 2014년 2월경 원고 운영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잦아지자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은 각자 소유하되, 이혼과 관련된 일들이 모두 마무리되면 피고가 보유한 원고 지분 40%를 C에게 이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바. 피고와 C은 2014. 2. 27.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다음날인 2014. 2. 28. 이 사건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3억 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와 C의 딸인 E와 함께 거주할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사. 그 무렵 피고는 원고 운영에서 물러났고, 2014. 4. 1. 협의이혼이 확정되자 원고 회계자료와 통장 등을 모두 C에게 넘겨주었다. 피고는 2014년 10월경 위 재산분할협약에 따라 C이 지정한 C의 전처 소생 아들 2명에게 원고 지분 40%를 모두 이전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13, 16, 29,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9. 26.¹⁾ 원고 자금 2억 5,000만 원을, 2014. 2. 28. 3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2012. 9. 5.부터 2013. 10. 8.까지 D에 대한 장부상 허위 거래를 통하여 합계 347,926,502원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피해액 합계 897,926,502원(= 347,926,502원 + 2억 5,000만 원 + 3억 원)을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D으로 지급된 돈 중 64,316,394원은 명목상 D의 세금 및 회사관리비, 거래처에 대한 임가공비로 사용되었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지출해야 할 자금을 D이 대신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금액 부분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가수금의 채권자는 피고이다. 2013. 9. 27.자 인출금 2억 5,000만 원 및 2014. 2. 28.자 인출금 3억 원은 피고가 가수금채권자로서 인출한 것이므로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가수금채권자가 C이라 하더라도 위 인출은 C과의 합의 내지 C의 포괄위임에 따른 것이다. C은 재산분할협의시 위 2억 5,000만 원을 피고의 소유로 하고, 피고에게 전세 자금으로 3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정했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D에 대한 외상대금 지급 부분

앞서 든 증거,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부터 피고 개인사업체 D으로 지급된 합계 347,926,500원²⁾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1) 피고가 2억 5,000만 원을 인출한 날은 2013. 9. 27.이므로(을 제16호증) 위 인출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2) 원고는 347,926,5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 거래처원장(갑 제7호증) 기재(2013. 6. 5. 외상대금 20,440,002원 지급)와 달리 실제 지급된 금액은 20,440,000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을 제16호증) 위 차액 2원 관련 주장

이득에 해당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함이 인정된다.

○ D은 자산, 설비 등 실질이 없는 명목상 사업자에 불과하다. 원고는 D과 물품공급계약 등 법률관계 내지 거래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 피고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외상대금채무 지급을 가장하여 원고 자금을 피고 명의의 D 계좌에 송금하였다.

○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1억 원을 자신 명의로 펀드에 투자하고, 1,000만 원을 피고의 오빠인 F에게 빌려주는 등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 피고는 지급받은 돈 중 64,316,394원이 원고를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의 계좌에서 임가공비 지급 명목으로 인출된 돈이 실제 그러한 용도로 사용된 것인지 의문이 들고, 실제로 임가공비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반출한 돈을 D의 임가공비로 지급한 것이나 D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것을 원고를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 원고는 2015년 7월경 이 사건 청구원인과 같이 원고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피고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2017. 11. 24. 이 부분(D에 대한 자금 집행으로 인한 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7노1173호),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위 유죄판결에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나. 2013. 9. 27.자 2억 5,000만 원, 2014. 2. 28.자 3억 원 인출 부분

앞서 든 증거,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인출해 간 합계 5억 5,000만 원을 원고에 반환할 의무를 부담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

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가수금채권자에 대하여

○ C은 2006년 5월경 D 운영에서 물러나면서 피고에게 D의 운영을 맡겼다. 그러나 C은 피고로부터 D의 자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바가 없고, D의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정황도 없다. 오히려 C은 피고가 D을 운영하는 동안에도 D 명의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였고, 피고에게는 월 400~5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지급하였다. C은 D의 계좌에 모이는 이익금 가운데 회사운영자금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속적으로 인출하였다. 따라서 D의 자산은 여전히 C의 소유였다고 보인다.

○ 피고는 D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C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지분도 C이 60%를, 피고가 40%를 가지는 것으로 하였다. D의 자산이 C의 소유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수금의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와 C이 별도로 가수금채권의 귀속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비록 피고가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회사를 성장시킨 공로가 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가수금채권이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 2013. 9. 27.자 인출금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 피고가 이 사건 가수금채권 반제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인출할 당시 C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C은 2013년 10월경 원고에 다시 출근하기 시작한 뒤 피고가 원고 자금 2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 명의로 펀드에 투자하였음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항의하였다.

○ 피고는 C이 피고에게 D의 운영을 맡겼고 그 후 설립된 원고의 운영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가수금채권을 반제받을 권한을 포함하

여 피해회사의 운영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가수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C이 위 인출 사실을 알게 된 후인 2014년 2월경 피고와 C은 이혼하기로 하면서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은 각자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그렇다면 위 협의에는 피고가 자신 명의로 펀드에 투자한 위 2억 5,000만 원을 그대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때부터 이 사건 가수금 중 인출된 위 2억 5,000만 원의 정당한 권리가 되었다.

○ 결국 피고가 원고 자금 2억 5,000만 원을 인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C에 대하여 부담하는 2억 5,000만 원의 이 사건 가수금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법률적, 경제적 관점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 2014. 2. 28.자 인출금 3억 원에 대하여

○ 원고가 피고를 고소한 관련 형사절차에서 C은 자신과 피고의 재산분할협의 당시 전세자금 3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적이 없고, 재산분할협의 이후인 2014년 3월경 피고로부터 전세자금 3억 원을 요청받고 피고에게 2억 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매달 500만 원씩 월급 형식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 이혼 협의 당시 피고가 향후 생활할 주거지를 구할 방법에 관하여서도 함께 논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는 C과 이혼하면서 C에게 원고 지분 및 운영권을 모두 양도하려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 계좌 역시 그대로 C에게 인계할 예정이었음에도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한 다음날인 2014. 2. 28. 원고 계좌에서 3억 원을 인출하였다. 위 인출이 피고와 C 사이의 전세자금 지원 합의에 따른 것일 수 있다.

○ C 역시 피고와 전세자금 3억 원의 지원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협의 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과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세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전세자금 용도의 금원을 20개월 간 나누어 지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 C은 늦어도 피고로부터 원고의 회계자료와 통장을 건네받은 2014년 6월 내지 7월경 피고가 위 3억 원을 인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C은 2015년 7월경 피고를 고소하기 전에 피고에게 이 부분 금원 인출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3억 원 인출은 이 사건 가수금채권자인 C의 재산분할협의결과에 따른 위임에 의한 것으로, 원고와의 관계에서 불법행위 내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합계 347,926,5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금원 수령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0.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30.까지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국현

판사 심현근

판사 김기호